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 12. 9 선고 2020가합3054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연

담당변호사 박연진, 이정근, 이새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장영달

피 고 1. C

2. D

3. E

4. F

5. G

6. H

7. I

8. J

9. K

피고 1, 2, 3, 5, 6, 7, 8, 9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영갑

변 론 종 결 2021. 10. 28.

판 결 선 고 2021. 12. 9.

주 문

1.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L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각 채권양도계약을 별지2 목록 ‘취소금액’란 기재 각 금액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들은 M[N생]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채권양도계약이 별지2 목록 ‘취소금액’란 기재 각 금액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물적 분할, 상호 변경, 소송절차 수계 등

1)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원고인 ‘주식회사 A’는 2021. 8. 27. 양축사업부문, 양어, 반려동물 사료 등의 제조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하여 2021. 10. 1. 신생 회사인 ‘주식회사 B’를 설립하였고, 분할 후 존속회사인 ‘주식회사 A’는 2021. 10. 1. ‘주식회사 O’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2) 한편, 물적 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B’는 이 사건 소송에 관한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아래에서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원고인 ‘주식회사 A(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O)’와 소송수계 후 원고인 ‘주식회사 B’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원고’라 지칭한다].

나. 원고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L(이하 ‘주식회사 L’이라 한다) 사이의 금전채권채무관계에 관한 확정판결 등

원고는 2015. 10. 30.부터 2019. 8. 21.까지 주식회사 L에게 배합사료 등을 외상으로 공급하고

598,065,86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주식회사 L을 상대로 '598,065,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19가합217호)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2020. 7. 2. 위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20. 7. 18.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주식회사 L과 피고들 사이의 채권양도계약 및 이에 관한 통지승낙

주식회사 L은 2019. 8. 14. 피고들과 사이에, 자신이 M에 대하여 보유하는 11억 원 상당의 금전채권을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나누어 피고들에게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이라 하고, 계약의 목적물이 된 11억 원 상당의 금전채권을 '이 사건 각 금전채권'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M에게 이에 관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한편, 이 사건 각 금전채권에 관한 채무자인 M도 같은 날 채권양도승낙서를 통하여 주식회사 L과 피고들 사이의 채권양도를 승낙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 중 별지2 목록 '취소금액'란 기재 금액 부분에 관한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다.

『주식회사 L은 무자력인 상태에서 피고들과 사이에, M에 대한 이 사건 각 금전채권을 피고들에게 양도하는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주식회사 L이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주식회사 L의 사해의사와 피고들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은 원고가 구하는 별지2 목록 '취소금액'란 기재 각 금액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M에게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이 각각 위 각 금액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나. 피고 C, D, E, G, H, I, J, K(이하 '피고 C 등'이라 한다)의 주장 요지

피고 C 등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고의 주장을 다두고 있다.

『① 주식회사 L은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 당시 충분한 자력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이 주식회사 L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1) ② 이 사건 각 금전채권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L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던 주체는 M이 아닌 P영농조합법인이었다. 즉, 주식회사 L이 당초에 존재하지 않는 M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 것은 무효이므로,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은 주식회사 L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2) ③ 피고 C 등은 주식회사 L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로서, 주식회사 L은 위 대여금채권을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 C 등에게 이 사건 각 금전채권을 양도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각 채권양도를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3) ④ M은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을 승낙하는 것을 넘어서 아예 주식회사 L이 피고 C 등에게 부담하는 차용금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 C 등도 이에 동의하였다. 즉,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M은 여전히 위 채무인수계약에 기하여 피고 C 등에게 금전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할 실익도 없다.4)』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의 정리

원고와 피고 C 등의 주장을 종합하면, 이 사안의 쟁점은 크게 ①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 당시에 주식회사 L이 무자력 상태에 있었거나,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L이 무자력 상태에 놓이게 되었는지 여부, ② 주식회사 L이 피고들에게 양도한 이 사건 각 금전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 여부(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이 유효인지 여부), ③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이 피고들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한 것으로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④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더라도 주식회사 L, 피고들, M 사이의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 위 계약을 취소할 실익이 없다는 피고 C 등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아래에서는 위 각 쟁점을 순차적으로 살펴본 후에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결론을 내리기로 한다.

나. 제1쟁점(주식회사 L의 무자력 여부)에 관한 판단

우선 주식회사 L이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에 무자력 상태에 있었거나,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 체결로 인하여 무자력 상태에 놓이게 되었는지 본다.

갑 제8호증의6, 42, 43, 갑 제10호증의1, 4, 갑 제11호증의1, 갑 제13호증의9, 갑 제15호증의7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L이 보령시 Q리 일대, 정읍시 R리 일대, 남원시 S리 일대에 복수의 토지건물유체동산을 소유하면서 농장을 운영하였는데(이하에서는, 위 각 농장에 부속된 부동산 및 동산을 합하여 각각 'T', 'U', 'V'이라 한다), 2019년경 T, U, V을 경매목적물로 하는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사실, 위 각 농장을 구성하는 부동산 및 동산의 감정평가액이 140억여 원이었던 데 반하여 위 각 임의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를 하거나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들의 채권금액은 210억여 원에 달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이에다가 갑 제8호증의46, 47, 78, 갑 제10호증의6, 9, 갑 제11호증의5, 6, 13의 각 기재,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피고 C 등은 주식회사 L이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 당시에 충분한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은 점, ② 2019년도에는 주식회사 L이 소유하는 T, U, V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는데, 위 절차 진행 과정에서 채권자들이 채권신고 또는 배당요구를 한 주식회사 L에 대한 채권액이 경매목적물인 위 각 농장의 감정평가액을 70억 원 이상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난 점, ③ 주식회사 L의 주된 영업재산인 농장(T, U, V)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었고, 결국 주식회사 L은 위 각 농장을 구성하는 부동산동산의 소유권을 모두 상실한 점, ④ 주식회사 L의 채무자인 M도 관련사건(이 법원 2020가합30740)에서 주식회사 L의 직원인 피고 D, G, H, I, J, K이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 전에 집에 찾아와 “W(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이 부도났다.”, “이거 빨리 처리해주고 저걸 해줘야 사장님도 살고, 자기들도 산다.”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 L은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 당시에 이미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제2쟁점(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

다음으로, 주식회사 L의 M에 대한 이 사건 각 금전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 채권인지, 다시 말하여 이 사건 각 금전채권을 목적물로 하는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이 유효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본다. 앞서 본 사실에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주식회사 L은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 당시 제3채무자를 P영농조합법인이 아닌 M 개인으로 기재하였고, M 역시 위 채권양도를 승낙하는 취지로 채권양도승낙서에 서명날인을 한 점, ② M이 관련사건(이 법원 2020가합30740 사건)에서도 주식회사 L에게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주체가 P영농조합법인이 아닌 M 개인이 맞다는 내용의 증언을 한 점, ③ M이 관련사건에서 주식회사 L의 직원인 피고 D, G, H, I, J, K이 먼저 자신을 찾아와 채권양도승낙서에 서명을 해 달라고 요청하여, 제3채무자가 'P농장 M'이라고 기재된 채권양도승낙서에 서명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④ 피고 D, G, H, I, J, K은 주식회사 L의 직원이었고, 특히 피고 G은 주식회사 L의 경리부장 직책을 맡았던 사람이었는바, 위 피고들은 주식회사 L이 보유하는 채권 내역에 대하여 잘 알 만한 지위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 L이 M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의 목적물이 되는 이 사건 각 금전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존재가 인정되는 이 사건 각 금전채권을 목적물로 하는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 역시 그 효력이 인정된다.

[피고 C 등은, 이 사건 각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M이 아닌 P영농법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을 제4호증의2를 제출하였다. 을 제4호증의2는 X가 주식회사 L의

P영농조합법인에 대한 금전채권을 목적물로 하는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한 사안(이 법원

2020타채9063)에서 제3채무자인 P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 M 명의로 제출된 진술서로서

‘주식회사 L의 P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채권은 이미 피고들에게 양도되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을 제4호증의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을 제4호증의2는 P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인 M으로부터 압류추심명령에 관한 각종 서류의

작성제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가 P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명의로 제출한 서류로서, M이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M은 관련 사건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할 당시, 변호사에게 압류추심명령에 대한 사건처리를 의뢰한 사실은 기억하면서도 을 제4호증의2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였고, 위 서류에 도장을 찍은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② 을 제4호증의2 중 ‘주식회사 L의 P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채권은 이미 피고들에게 양도되었다’는 기재 부분은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를 P영농조합법인으로 보더라도 위 피압류채권이 압류추심명령의 효력 발생 전에 제3자에게 양도되었으므로 위 압류추심명령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이를 피압류채권의 채무자가 M이 아닌 P영농조합법인임을 확정적으로 인정하는 취지의 기재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 L이 M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금전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다른 정황사실이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을 제4호증의2는 주식회사 L의 M에 대한 이 사건 각 금전채권의 존재를 인정하는 데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라. 제3쟁점(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다음으로,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이 피고들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피고 C 등의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으나(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다12046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등 참조).6) 위 법리에 터 잡아 앞서 본 사실에 갑 제8호증의78, 갑 제10호증의9, 갑 제11호증의13,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은 주식회사 L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 C 등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 C 등은 주식회사 L에 대하여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여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금전채권을 주식회사 L으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C 등이 주식회사 L에 대한 관계에서 양도받은 채권가액에 상응하는 대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이 법원에 제출된 바 없다.

② 주식회사 L이 양도한 이 사건 각 금전채권의 가액은 11억 원으로, 주식회사 L의 전체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작지 않다. 이에다가 ㉡ 주식회사 L이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 당시에 자신이 보유하는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채무를 모두 갚기 어려운 심각한 무자력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M에게는 적어도 이 사건 각 금전채권의 일부는 변제할 수 있는 자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를 비롯한 주식회사 L의 일반채권자들은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평가된다.

③ 피고 E은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인 W의 매형이고, 피고 C, D, G, H, I, J, K은 주식회사 L의 직원이었으므로(그중 피고 G은 주식회사 L의 경리부장으로 근무하였다), 주식회사 L이 처한 경영 상태나 주식회사 L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현황에 대하여 비교적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또한, M은 관련사건에서 피고 D, G, H, I, J, K이 먼저 자신을 찾아와 “W(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이 부도났다.”, “이거 빨리 처리해주고 저걸 해줘야 사장님도 살고, 자기들도 산다.”와 같은 말을 하여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에 승낙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기도 하였다. 이를 보면,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은 주식회사 L과 피고들과의 통모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평가할 여지도 상당하다.

마. 제4쟁점(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할 실익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한편 피고 C 등은, M이 주식회사 L의 피고들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인수하는 데 합의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더라도 M이 피고들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는 결론에는 변함이 없어, 굳이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할 실익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M이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에 관하여 승낙하는 취지의 채권양도승낙서를 작성한 것 외에 주식회사 L의 차용금채무를 인수하는 취지의 채무인수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었던 점, ② 주식회사 L이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 당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금전채권 가액에 상응하는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즉, M이 인수할 채무가 당초에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③ 설령 M, 주식회사 L, 피고들 사이에 채무인수계약이 체결되었다는 피고 C 등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해성이 인정되는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이 위 채무인수계약으로 인하여 사해행위가 아닌 것이 된다고 볼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 등이 주장하는 사실관계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사실관계를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는 데 아무런 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

바. 소결론

그렇다면, 주식회사 L과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은 주식회사 L이 무자력인 상태에서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 체결한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관하여 수익자인 피고들의 약의 역시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은 원고가 구하는 별지2 목록 ‘취소금액’란 기재 금액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M에게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이 별지2 목록 ‘취소금액’란 기재 각 금액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었다는 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성기권, 판사 김재현, 판사 박광선

별지1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의 내용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L이 M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중에서, 피고 C에게 85,000,000원, 피고 D에게 189,100,000원, 피고 E에게 283,500,000원, 피고 F에게 94,600,000원, 피고 G에게 77,600,000원, 피고 H에게 167,900,000원, 피고 I에게 113,500,000원, 피고 J에게 56,500,000원, 피고 K에게 32,300,000원 부분을 각각 양도한다는 내용의 2019. 8. 14.자 채권양도계약. 끝.

별지2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의 취소 범위

채권 양수인	양도금액(원)	취소금액(원)
피고 C	85,000,000	46,214,160
피고 D	189,100,000	102,812,913
피고 E	283,500,000	154,137,816
피고 F	94,600,000	51,433,641
피고 G	77,600,000	42,190,809
피고 H	167,900,000	91,286,558
피고 I	113,500,000	61,709,496
피고 J	56,500,000	30,718,824
피고 K	32,300,000	17,561,380
합계	1,100,000,000	598,065,597

끝.

- 1) 피고 C 등의 2020. 12. 2.자 준비서면 1~2면, 2021. 5. 18.자 준비서면 2~3면 참조.
- 2) 피고 C 등의 2021. 7. 14.자 준비서면 1~2면 참조.
- 3) 피고 C 등의 2020. 12. 2.자 준비서면 1면, 2021. 5. 18.자 준비서면 2면 참조.
- 4) 피고 C 등 의 2021. 5. 18.자 준비서면 3~4면 참조.
- 5) 피고 C 등은 단순히 ‘경매사건 기록은 오히려 주식회사 L의 변제자력이 충분한 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라고만 주장하고 있다(2021. 5. 18.자 준비서면 2~3면 참조).
- 6) 피고 C 등 은 대물변제로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변제의 경우와 같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822 판결의 판시사항을 토대로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피고 C 등의 2021. 5. 18.자 준비서면 1~2면).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은 대물변제에 대해서도 사해행위를 판단하는 일반기준에 따라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등에 의하여 사실상 변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Y, “2010년 민법 판례 동향”, 민사재판의 제문제 20권, Z학회 (2011), 16~17면], 이 사안에서는 대법원 2003다60822 판결이 아닌 대법원 2007다2718 판결의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평가하기로 한다.